

#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 위촉 및 「기술탈취 근절대책」발표

- 벤처기업협회 익명제보 핫라인 구축 및 기술탈취 빈발업종별 감시관 위촉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11월 4일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기술탈취에 대한 감시 수준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 12명을 위촉하였습니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공정성장 경제환경의 실현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술탈취행위에 대한 촘촘한 감시, 엄중한 제재는 물론, 예방·보호·재기 전(全) 과정에서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통합적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 가겠으며, 기술탈취를 선제적으로 적발하기 위한 민관협력 감시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을 위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술탈취 근절대책」은 지난 **관계부처 합동대책(9.10.)** 및 **중소벤처업계와의 현장소통 간담회(9.25.)**를 바탕으로 마련되었으며, 크게 ① 기술탈취의 선제적 적발을 위한 집중 감시체계 확립, ② 기술탈취 법집행 강화, ③ 피해기업의 중 거확보 및 입증부담 완화, ④ 기술탈취 피해구제 및 역량 지원 강화 네 가지 축으로 구성됩니다. 아래에서 각 과제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1. 주요 내용

## 가. 기술탈취 선제적 적발을 위한 집중 감시체계 확립

핵심 과제	주요 내용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 제도 도입	- 대기업의 기술탈취 혐의 등에 대한 제보 기능을 담당하는, 일종의 ' <u>암행어사</u> '와 같은 활동을 하는 ' <u>기술보호 감시관'을 위촉</u> 하여 숨은 피해 발굴
기술탈취 익명제보 활성화 등 현장 소통 강화	- 벤처기업협회 등에 기술탈취 익명제보센터를 설치하여 <b>현장에서</b> 바로 공정위에 제보할 수 있는 장치 마련
기술탈취 유관기관 실무협의회 정례화	- 중기부·지식재산처·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실무협의회를 상·하반기 개최 → 하도급 거래관계의 기술탈취 혐의에 대한 정보 공유 활성화

# Yulchon Legal Update

# 나. 기술탈취 법집행 전면적 강화

핵심 과제	주요 내용
<b>기술탈취 빈발업종별</b>	- 기계, 전기·전자, 자동차 부품 등 기술탈취 빈발업종을 중심으로 기술
<b>수시 직권조사 확대 실시</b>	유용 행위 등에 대한 직권조사를 확대
(연 2회 → 연 3회 이상)	→ 기술탈취 입증 자료 적극 확보
기술탈취 담당 조사인력 대폭 증원 추진	- 분야별 <b>전문인력</b> (변리사, 기사·기술사 등) <b>다수 신규 채용</b> 하여 전문
(관계부처 협업)	분야 기술탈취 사건 접수 시 적극 대응
기술심사자문위원회 재편을 통한 기술성 판단 전문성 제고	- 기술탈취가 빈발하여 자문 수요가 높은 분과를 <b>세분화된 영역</b> 으로 <b>분류·재구성</b> 하여 <b>업계 최신 기술동향을 고려</b> 한 <b>전문화된 사건처리</b> 실시

# 다. 피해기업의 증거확보 및 입증부담 완화

핵심 과제	주요 내용
<b>'한국형 증거개시제도</b> (디스커버리) <b>' 도입</b> 【하도급법 개정 예정】	<ul> <li>소송과정에서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기술심리관 등)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직접 피해 관련 증거를 수집 → 증거로 활용('전문가 사실조사제도')</li> <li>조사 이전 대기업의 자료 폐기를 방지하기 위한 ▲자료보전명령 제도,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돕는 ▲법정 외 진술녹취 제도를 함께 도입</li> </ul>
<b>법원에 대한 공정위 자료제출의무 도입</b>	- 공정위가 기술탈취 관련 법 위반행위 <b>조사과정에서 확보한 증거자료</b> 를
【하도급법 개정 예정】	소송과정에서 <b>법원 요구에 따라 제출하도록 의무화</b>
<b>기술탈취 피해사실의 입증책임 전환</b>	- 손해배상소송에서 가해기업이 행위의 고의·과실이 없음(현행)뿐만
【하도급법 개정 예정】	아니라 구체적 행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까지 지도록 의무화(개선)

## 라. 기술탈취 피해구제 및 역량 강화 지원

핵심 과제	주요 내용
<b>하도급법상 '사인(私人)의 금지청구제' 도입</b> 【관련 하도급법 개정안 공포('25.9.16.) 및 12월 시행 예정】	<ul> <li>기술탈취 등 법 위반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수급사업자</li> <li>→ 공정위 처분을 거치지 않고도 직접 법원에 금지·예방 청구 가능</li> <li>이와 함께 기술탈취로 제작된 물건·설비(금형, 제품 등) 폐기 등 법위반행위 금지·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도 함께 청구 가능</li> </ul>
<b>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 마련</b> 【공정거래법·국가재정법 등 개정 예정】	- 기술탈취 등 <b>불공정거래 피해자</b> 에 대한 신속·효과적 피해구제를 위해 <b>공정위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는 피해구제 기금 마련</b>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강화 지원	- 기술자료·비밀보호 인식 개선 및 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컨설팅 사업·교육 확대 추진

# Yulchon Legal Update

#### 2. 시사점

이번 「기술탈취 근절대책」은 예방·보호·재기 전(全) 과정에 대하여 ▲ <u>'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제도</u>, ▲한국형 증거 개시제도, ▲사인의 금지청구제 등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근절대책은 지난 9월 진행된 관계부처 합동대책 및 중소벤처업계와의 현장소통 간담회를 기반으로 마련된 만큼, 공정위의 추진 의지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기업에서는 제도개선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고, <u>하도급법 및 공</u>정거래법 등 위반 리스크를 사전에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공정위는 그동안 실태조사·익명제보 등을 활용한 기술탈취 정보 수집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인정하며, 금번에 도입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 벤처기업협회 등에 설치하는 기술탈취 익명제보센터, 기술탈취 유관기관 실무 협의회를 통해 기술탈취 혐의에 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상시 집중 감시체계를 확립하겠다고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하도급거래가 있는 기업은 수급사업자와의 분쟁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 및 내부 통제체계를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관련 보도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바로가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 Areas**

#### 공정거래

### **Contact**

**윤정근** 변호사 02-528-5179 jkyun@yulchon.com

**황윤환** 변호사 02-528-6464 yhhwang@yulchon.com

**류송** 변호사 02-528-6473 sryu@yulchon.com

**박양진** 변호사 02-528-6472 yjpark@yulchon.com **강성일** 변호사 02-528-5920 sikang@yulchon.com

**정성무** 변호사 02-528-5724 smjung@yulchon.com

**이승재** 변호사 02-528-5590 sjlee@yulchon.com

이충민 변호사 02-528-5750 cmlee@yulchon.com **박성범** 변호사 02-528-5840 sbpark@yulchon.com

**한승혁** 변호사 02-528-5633 shhan@yulchon.com

**최유미** 변호사 02-528-6442 ymchoi@yulchon.com

**김건웅** 변호사 02-528-5963 kwkim@yulchon.com 정세훈 외국변호사 02-528-5923 cschung@yulchon.com

**김규현** 변호사 02-528-5860 khkim@yulchon.com

**이우열** 변호사 02-528-5906 wylee@yulchon.com

